

■ 2021.07.05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주체	수탁사	아시아인택 주식회사	110111-354380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동(대치동, 케이티엔타워)
	위탁사	주식회사 코원디앤디	135711-0112632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45, 에프754(풍산동, 미션센터비즈)
시공사	주식회사 태영건설	110111-015545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24(정발동)	

II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주)중합건축사사무소동일건축	(주)세종기술단	이수기술단(주)	이수기술단(주)
감리금액	2,452,060,600	623,208,000	291,060,000	163,240,000

- ### III 공급위치 및 규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진주시 주택경관과 - 44473호(2021.10.1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2092 (신진주역세권 B-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9~25층 11개동 총 810세대(특별공급 439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74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81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48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24세대, 생애최초특별공급 112세대 포함) 및 부대부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IV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주택	2021000710		01	84.9301A	84A	84.9301	27.7367	112.6668	173.8270	49.5255	694	400	294	39												
															02	84.9786B	84B	84.9786	28.4337	113.4123	174.6074	49.5538	50	30	20	2
															03	121.9504	121	121.9504	38.1948	160.1452	247.9645	71.1133	66	9	57	3
															합 계											810

V 공급일정 및 장소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10월 26일(화)	10월 27일(수)	10월 28일(목)	11월 03일(수)	11월 04일(목) ~ 11월 12일(목) ~ 11월 15일(월) ~ 11월 17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설주택 방문접수 (10:00 ~ 17:00) (사전 방문예약제)	건설주택 방문접수 (10:00 ~ 16:00) (사전 방문예약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진주역세권 데시앙 견본주택 (진주시 충무공동 87-20번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식이 「건설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완료하지 않거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 가능함입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는 청약일 당일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 신청자격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성/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음,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공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안건)공급대상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공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에만 청약 가능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세대수				합계	
	84A	84B	12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보훈보상대상자 포함)	15	1	-	16
	장애인	장기복무제대군인	5	1	-	6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0	-	-	10
		중소기업근로자	9	-	-	9
		경상남도	28	3	-	3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부산광역시	1	-	-	1	
	울산광역시	1	-	-	1	
	합 계	69	5	7	-	81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138	10	-	-	14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	2	2	-	24
	생애최초 특별공급	104	8	-	-	112
합 계	400	30	9	-	439	

-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진주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제대부양) 중 입주자지적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재국외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에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한,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진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입니다.
 -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지적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입주자지적 순위별 요건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1. 해당 주택건설 지역 : 진주시 1년 이상 거주자	85㎡ 이하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40%, 추첨제 6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적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입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첨제 100% 비율로 당첨자를 선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지적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로 납입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입금액이 주택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2. 기타지역 : 진주시 1년 미만 거주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	85㎡ 초과	2순위	전 주택형

■ 청약예치금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경상남도, 진주시)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VII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소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사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일 청약연속]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시 세대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함입니다.
 * 「모집공고일 청약연속」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일 청약연속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시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VIII 당첨자 발표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1.11.03.(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IX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층구분	세대 수	분양가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중도금(6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지정일		
84.9301A	1층	26	151,619,000	272,981,000	-	424,600,000	42,460,000	42,460,000	42,460,000	42,460,000	42,460,000	42,460,000	42,460,000	42,460,000	42,460,000	127,380,000
	2층	39	151,619,000	280,181,000	-	431,80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129,540,000
	3-4층	78	151,619,000	286,781,000	-	438,400,000	43,840,000	43,840,000	43,840,000	43,840,000	43,840,000	43,840,000	43,840,000	43,840,000	43,840,000	131,520,000
	5-9층	195	151,619,000	293,481,000	-	445,10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44,510,000	133,530,000
	10-25층	356	151,619,000	300,181,000	-	451,80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45,180,000	135,540,000
84.9786B	1층	2	151,706,000	271,294,000	-	423,0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42,300,000	126,900,000
	2층	2	151,706,000	278,494,000	-	430,20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129,060,000
	3-4층	4	151,706,000	285,094,000	-	436,80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43,680,000	131,040,000
	5-9층	10	151,706,000	291,894,000	-	443,60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44,360,000	133,080,000
	10-25층	32	151,706,000	298,594,000	-	450,30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45,030,000	135,090,000
121.9504	1층	3	217,709,000	391,264,545	39,126,455	648,100,000	64,810,000	64,810,000	64,810,000	64,810,000	64,810,000	64,810,000	64,810,000	64,810,000	64,810,000	194,430,000
	2층	3	217,709,000	400,537,273	40,053,273	658,300,000	65,830,000	65,830,000	65,830,000	65,830,000	65,830,000	65,830,000	65,830,000	65,830,000	65,830,000	197,490,000
	3-4층	6	217,709,000	409,082,727	40,908,273	667,70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66,770,000	200,310,000
5-9층	15	217,709,000	417,719,091	41,771,909	677,200,000	67,720,000	67,720,000	67,720,000	67,720,000	67,720,000	67,720,000	67,720,000	67,720,000	67,720,000	67,720,000	203,160,000
	10-24층	39	217,709,000	426,446,364	42,644,636	686,800,000	68,680,000	68,680,000	68,680,000	68,680,000	68,680,000	68,680,000	68,680,000	68,680,000	68,680,000	206,040,000

X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1-101-0013700 호	₩ 263,814,67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XI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이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공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 공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항 목	금 액	
	합 계	산출근거
택지비가산비	합 계	13,331,182,059